

“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.”



## 법원행정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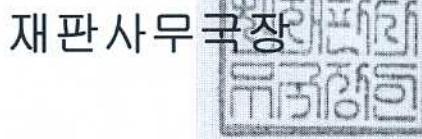
수신자 임그루(36322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, 다세대주택A  
동 103호)

경유

제목 민원회신(임그루)

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(2017. 2. 27. 신청번호 :  
1BA-1702-154903)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.

1. 귀하의 민원요지는 확정된 본인의 각 행정사건(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, 2006 재누171)과 관련하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취지로 보입니다.
2. 헌법 제103조는 “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.”라고 정하고 있는바,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, 항고,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.
3. 아울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, 법무사, 대한법률구조공단 ([www.klac.or.kr](http://www.klac.or.kr) 전화 국번 없이 132) 등의 유/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

법원주사보

안상기

법원사무관

이건웅

과장

방웅석

국장

03/08  
심재금

협조자

시행 종합민원과-2200 ( 2017.03.08. ) 접수 ( )

우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/ <http://www.scourt.go.kr>

전화 02)3480-1423 /전송 02)536-0296 / [@scourt.go.kr">/ 공개](mailto:@scourt.go.kr)